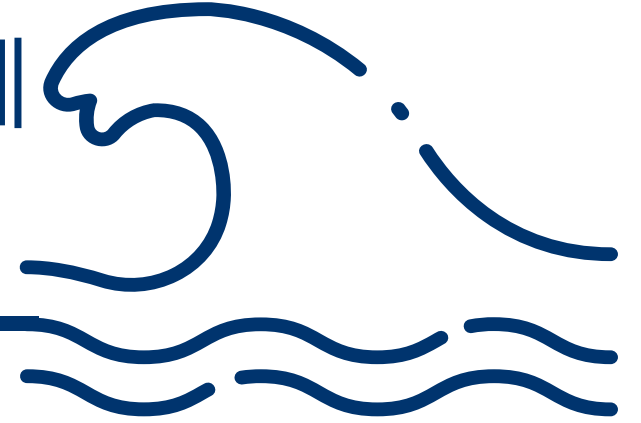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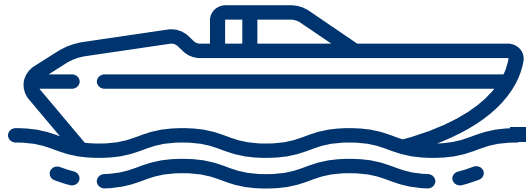


# 국제해협에서의 통항 문제

- 국가 관행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방호삼

한국수로학회,  
2022. 6. 21(화)

# CONTENTS

01 들어가며

02 국제해협과 통과통항권의 개념

03 국제해협 통과통항권의 국가관행

04 논의에 따른 시사점

05 나오며

## 사건

- 2021.1.4 한국선박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에 의해 나포됨
  - 이란의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여부
- (이란의 나포명목)
  - 한국케미호의 반복적 해양환경 규제 위반
- 이란의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당시 해석선언
  - '통과통항권'은 관습국제법이 아니며, UNCLOS비당사국은 동 권리를 못 누림

## 발표 주요 내용

- 선박의 통항과 관련한 논의의 중요성
  - **국제해협의 법적지위**와 그에 따른 통항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논의가 중요
  - 알아야만,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 국제해협의 법적지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국제해협 **통과통항권(통항방식)의 지금 현재 법적 지위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
  - 그래야만,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대응 방법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임



- 국제해협의 법적지위에 대한 평가와 국제해협 통항제도의 검토는, 조약(유엔해양법협약)상 제도과 아울러 해당 규정의 관습국제법 지위 여부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왜냐하면 조약상 규정과 별개로, 일반적이며 일관되는 국가관행(State practice)은 법적 확신 (*opinio juris*)의 존재에 힘입어 관습국제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

## 국제해협

국제해협이란, 양쪽이 육지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길고 좁은 바다로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

- 국제해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지리적 요건 + 기능적 요건)이 필요
  - 1) (지리적) 육지에 의해 길고 좁은 바다로 형성되어야 하고(그래서 하나의 공해 또는 EEZ와 다른 공해 또는 EEZ를 연결)
  - 2) (기능적) 국제항해에 사용



## 사건에서의 국제해협

- 문제가 되는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를 판단하고 나서 그 해협에서 허용된 통항 방식을 파악
-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는 ICJ가 1949년에 판결한 Corfu Channel 사건을 보아야 함) ICJ는 이 사건 판결에서, 관습국제법상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을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소'와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기능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정의함
- 이 해협은 공해(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두 부분을 연결하고 있으며, 원유 수송 등을 목적으로 국제항행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관습국제법상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

## 통과통항권

##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 통과통항이라 함은, 선박이나 비행기가 국제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continuous and expeditious**) 통과할 목적으로 통상적인 항행 방법에 따라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말함
-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브랄타 해협은 최소 폭이 7.5해리에 불과하고, 중동 석유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도 최소 폭이 약 20.6해리) 논란의 결과, **12해리 영해를 인정하는 대신 국제해협에서는 기존처럼 항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한 제도가 → 통과통항임!**

## 통과통항권

-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제3항)
- (해협에서 통과통항권의 행사가 아닌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르게 됨)
- 통과통항권이 아닌 행위가 연안국의 영해에서 이루어진다면, 해협 연안국은 본 협약 제17조에서 제26조까지의 무해통항 규정을 적용하려 들 것임
- 무해통항 제도 하에서, 유해한 통항에 대하여는 통항이 저지될 수도 있음

### ● 무해통항 (유엔해양법협약)

- 연안국의 영해를 외국선박이 항행하는 권리
- 연안국의 평화, 안전보장,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권리가 존재
- 영해 상공에서는 **타국 항공기의 상공비행 자유는 없음**
- 잠수함 잠항 통항 금지(수면 위 부상해서 기국의 국기를 내보이며 통항해야 함)
- 유해통항을 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능

### ● 통과통항 (유엔해양법협약)

- 연안국의 국제해협(영해로만 구성되었다)을 외국선박이 항행하는 권리
- 연안국이 영해를 12해리 확장하면서 기존에는 공해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영해로만 구성되어 있는, 외국선박(항공기)의 국제해협에서의 통항방식
- **국제해협에서는 상공비행의 자유 인정**
- 잠수함 잠항 통항 가능
- 유엔해양법협약 제233조에 따라, 외국선박이 연안국에게 중대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정지되지 않는 통항권 행사 가능
- **무해통항보다 자유로운 선박과 항공기의 통항**

관습국제법 -  
국가관행, State Practice



**미국**

-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아님
- 국제해협 통과통항 제도, '관습국제법의 일부' 라고 옹호함



**프랑스**

- 통과통항권
- 일반국제법 (general international law)



**영국**

- 통과통항권
- 일반국제법 (general international law)

- 관습국제법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국가관행의 존재를 파악해야 함
- 일국의 해당 국제법규범에 대한 태도
  - Ex. 국제해협 연안국이 가지는 통항선박에 대한 입장
  - 국제협약 성립 당시의 유보, 해석 선언
    - 의회 입법, 정부의 선언 또는 외교당국의 입장

주요 해운국의 관행과 해협연안국의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러시아의 경우, 영미 국가들처럼 통과통항권을 옹호하지만, 러시아의 관행은 일관되지 않는 점 (Ex. 자국의 쿠릴해협) 존재함



States	Position	Remarks
스페인, 모로코	통과통항권 부인	유엔해양법협약 협상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원칙적으로 통과통항권 인정	우려했던 사항으로, 유조선이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면서 가하는 위협
이란, 오만	(이란) 협약 비당사국, (해석선언) 협약당사국만이 통과통항권 누림 (오만)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에 대하여 침묵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 <u>이란의 견해는 스위스와 그리스의 입장과 일맥상통함</u>

해협연안국들은 대체로 **통과통항권을 조약상 권리로 본다.**

States	Position	Remarks
<u>한국 &amp; 일본</u>	해협에서 (영해 3해리 선포&)공해대를 존중시킴으로써, 영해에서는 통항통항권 미적용	<b>대한해협,</b>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도 유사한 관행 있음]
덴마크 스웨덴	<b>무해통항 (No 통과통항)</b>	The Straits of Sound and the Belts, <b>미국의 반대!</b>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베네수엘라	양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통과통항권을 인정	양자협정(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and the Republic of Venezuela on the Delimitation of marine and Submarine Areas)

관행의 **상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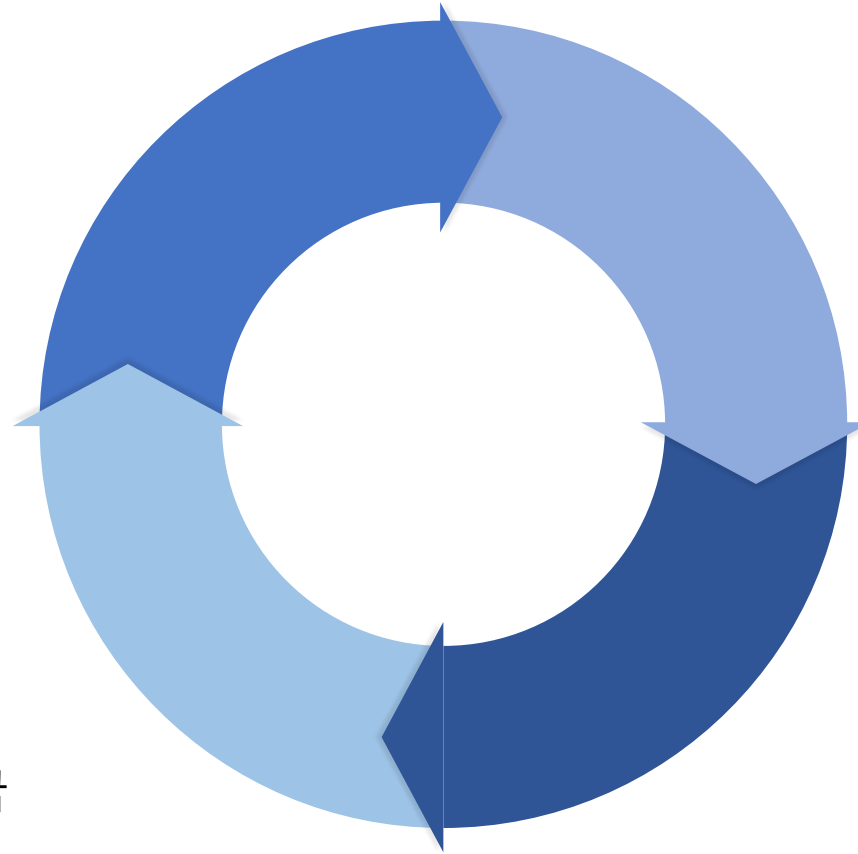
NO	Contents	Contents	Remarks
01	통과통항권의 관습국제법 가능성	협약 채택 이후 국가관행에 의해, 통과통항제도가 관습국제법으로 통과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u>그러나,</u>	관습국제법 성립의 요건 = 국가관행 + <i>opinio juris</i>
02	국가관행의 조사 결과	국가관행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The State practice has a <b>certain ambivalence!</b>
03	요는,	국제항행 면에서 중대한 특정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과 같은 외국 선박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The Strait of Dover, The Strait of Gibraltar
04	결과적으로,	<u>통과통항권의 일반적인 권리는 관습국제법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u>	통과통항권에 대한 국가관행 일반성-일관성 발견의 어려움

## 01 국제해협 통과통항권

- 관습국제법?
- 조약상 권리

## 03 조약상 권리...

- 국제해협별, 해협연안국 별 상이한 통항제도
- 혼란 야기, 마주보는 해협연안국 들끼리도 상이한 집행 조치 ⇒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 02 호르무즈 해협

- 이란 – 통과통항권 부인
- If so, (non-suspendable) **innocent passage!** (But, note – 이란 '해양영역 법률')

## 04 국제해양법 정신

- 해양에서의 질서정연한 선박 통항의 모습?
- 국제해협 이용국들의 문제 제기와 해협연안국들과 이용국 간의 충돌

감사합니다

THANK YOU

